

무역구제제도 이용절차 대폭 간소화

- 무역위원회(상임위원 김호원)는 무역으로 인한 우리기업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반덤핑조사, 불공정무역행위조사, FTA무역피해조사의 세부절차를 규정한 덤핑조사실무지침 등 5개 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'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
 - * 덤핑 조사 실무지침, 국내산업피해 조사 실무지침,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실무지침, 무역피해조사 실무지침, 무역피해심의규정(고시)
- 무역위원회는 관련지침을 최초로 전면 개정하였으며, 그 의의와 효과는 다음과 같음
 - 중소기업들이 무역구제제도를 보다 손쉽게 이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
 - FTA무역피해의 신청서류인 무역피해사실입증서 기재사항을 약 절반으로 축소
 - FTA무역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기간이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
 - 신청기업의 영업비밀이 보다 철저히 보호됨
 - FTA무역피해 심의결과를 외부에 공표하는 경우 신청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규정 신설
- 무역위 조사, 판정활동의 투명성이 높아짐
 - 반덤핑조사 최종판정전 이해관계인에게 잠정덤핑률을 공개하도록 공식적으로 규정
 - 원산지표시위반 행위 조사과정에 이해관계인이 참여 기회 신설
 - 현지 실사시 대응기업의 자료제출방법을 구체화
- 기타 무역위원회 조사실의 조사기법 중 확립된 관행과 WTO패널의 판례 등을 지침에 반영함
 - 수입품의 정상가격을 판정하는 관련기법의 하나인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의 방법을 구체화
 - 수입품의 수출가격을 판정하는 방법의 하나인 구성수출가격 적용시 이윤조정의 방법을 구체화
 - 조사대상이 아닌 업체에 대한 덤핑률을 산정하는 방법의 하나인 기타덤핑률 산정방법을 구체화
- 한편, 무역위원회는 중소기업들이 무역구제제도의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덤핑, 불공정무역행위 등의 기초부터 실무까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「무역구제제도 이해하기」(약 150쪽)도 최초로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할 계획임을 밝힘
- 지침별 주요개정 내용

덤핑조사 실무지침

- 「덤핑률조사 실무지침」, 「덤핑방지관세 등에 대한 재심사 실무지침」, 「덤핑률조사 현지실사검증세부지침」의 3개 지침을 「덤핑조사실무지침」으로 통합함
- 최종판정전 이해관계인 회의시 잠정덤핑률을 공개하던 관행을 지침에 반영
 - * 잠정덤핑률 : 무역위의결전에 무역조사실이 잠정적으로 산출한 덤핑률
-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시 품목의 성격 등을 고려한 세부품목별 검증방법을 지침에 추가
 - *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수 판매물량이 충분해야 함
- WTO협정이나 관세법령의 규정으로는 기타 덤핑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기타덤핑률 산정방법의 근거를 규정
- 특수관계자와 가중평균 거래가격이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의 일정범위(98~102%) 밖에 있을 경우 이를 통상적 거래에서 제외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실무지침

-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상정안건을 피신청인에게 사전통지하고 서면 의견서나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
-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이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조사신청서에 무역업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
- 원산지 표시위반, 수출입 질서저해 행위에 대한 무역위의 조사과정에서 기술설명회 형식을 준용한 이해관계인 회의를 신설

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

- 원심 및 재심 관련사항을 통합하고 현지실사 관련 내용을 추가
- 신청자의 철회신청을 무역위원회가 수락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철회사유와 철회시기로 나누고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요소를 제시
 - * 철회신청 수락여부 판단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
- (i) 철회사유
 - 이해관계인간의 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정황이 있는지 여부
 - 신청인이 조사신청 및 철회를 반복하는 등 부당하게 반덤핑제도를 남용한다는 정황이 있는지 여부
 - 기타 철회신청에 따른 조사종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
- (ii) 철회시기
 - 철회서 제출이 조사절차진행을 심히 저해하는 시기에 이루어졌는지 여부

FTA로 인한 무역피해심의 규정 및 실무지침

- 심의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하고, 위원회의 심의 등 필요한 경우에는 4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
- 심의대상기간을 피해발생기간(6개월)과 비교동일기간(6개월)으로 하되, 수입증가 또는 인과관계 여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최근 3년의 기간을 심의대상기간으로 할 수 있음
 - * 수입증가와 신청기업이 입은 피해의 인과관계는 피해발생년도와 전년도, 전년도와 전전년도의 비교를 통해 추세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음
- 무역조정지원 신청기업과 무역피해 조사기관에 부담을 초래하는 현행 서식의 기재사항과 심의기준(심사지표)을 간소화
- 무역피해사실입증서 기재사항을 무역피해품목의 동종 여부, 신청기업의 피해유형에 따라 필요한 사항만 작성토록 간소화